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115
----------	------

제출년월일 : 2018. 1. 18.

제 출 자 : 나 정 숙 의원 *타11인*

제안이유

-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한부모 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한부모 가족이 건강가족 및 복지정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
(안 제4조)
- 한부모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그 내용을 정함
(안 제5조)
-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과 지원중지 사유를 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
- 공공근로사업에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무를 정함 (안 제9조)
-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 사전예고결과(의견있음) : 붙임5
 - 입법예고 : 2017. 12. 27~ 2018. 1. 8(12일간)
- 기타 참고사항 (부서의견) : 붙임 6

【붙임1】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중지)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는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나정숙 대표발의 (행정 356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정의)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p> <p>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정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p> <p>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의 다른 복지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한부모 가족의 기초 통계조사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p>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대상자) <u>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지원사업)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시장은 난방비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난방비 지원을 중지한다.</p> <p>1. ~3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p>	<p>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신 설>	<p>제8조(지원중지) ①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신 설>	<p>제9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p>
<신 설>	<p>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제6조(환수) (생략)	제11조(환수) (현행 제6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시행규칙)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7와 같음)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115
----------	------

제안년월일 : 2018. 2. 1.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수정이유

- 상위법에서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 기준범위가 변경되어 수정필요

주요골자

-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로 한정함.(안 제7조제3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지원대상자에게”를 “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u></p> <p>1. <u>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u></p> <p>2. <u>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사업</u></p> <p>3. <u>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사업</u></p> <p>4. <u>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7조(지원사업) ① <u>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할 수 있다.</u></p> <p>1. <u>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홍보사업</u></p> <p>2. <u>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u></p> <p>3. <u>보건·의료서비스 지원</u></p> <p>4. <u>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u></p> <p>5. <u>미혼모부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u></p>	<p>제7조(지원사업) ①(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6. <u>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u></p> <p>7. <u>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u></p> <p>8. <u>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u></p> <p>9. <u>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u></p> <p>③ <u>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별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②(개정안과 같음)</p> <p>③ ----- <u>지원대상자 중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에게</u> ----- ----- -----</p>